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. 12. 9 선고 2022가단5806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1. 18.

판 결 선 고 2022. 12. 9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가 2021. 9. 9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21. 9. 10. 접수 제22937호로 마친
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존재

1)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7260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2020. 3. 11. 위 법원으로부터 “D는 원고에게 12,427,410원 및 위 금액 중 3,681,344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”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.

2) 위 지급명령정본은 2020. 3. 16. D에게 송달되었고, 2020. 3. 31. 확정되었다.

나. D의 사망과 C의 상속

D는 2021. 1. 22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는 모 C가 있다.

다.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

1)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2. 9. 3. 접수 제16633호로 1992. 6. 10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D,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(각 1/2 지분)가 마쳐져 있었다.

2)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21. 9. 10. 접수 제22936호로 2021. 1. 22.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D의 모 C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3) C는 2021. 9. 9. 자신의 아들이자 D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,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21. 9. 10. 접수 제22937호로 2021. 1. 22. 지분전부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라. C의 재산상태

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공시지가 합계 14,227,889원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, 5호증,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, 북광주세무서장, 광주광역시북구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,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가 원고에 대하여 12,427,410원 및 위 금액 중 3,681,34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. 1. 22.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C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2) 나아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3) 따라서 채무자인 C가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C의 채무초과상태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.

그러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장윤미

<별지>

부동산 목록

1. 전라남도 광양시 E 전 66㎡
2. 전라남도 광양시 F 임야 694㎡
3. 전라남도 광양시 G 임야 26710㎡, 끝.

